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10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서삼석·송갑석·이개호

허 영・임오경・전용기

주철현 · 이형석 · 박 정

박상혁 · 신영대 · 이상직

신정훈 • 윤영덕 • 윤후덕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해양질서의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의 기능·업무가 해상경비, 어로보호, 해양안보, 해양경찰, 범죄수사, 해양오염방지, 해상교통안전, 자원보호, 해양레저관광 등으로 확대되면서 함정·항공기 등 해양경찰장비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 또한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 강화, 해양안전·안보영역 확대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경찰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해양경찰대를 창설한 이래 해양경찰장비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일반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따라 규율되어 오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020년 2월 21일자로

시행된 「해양경찰법」에도 해양경찰장비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되어 있음.

이에 반하여 유사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육상경찰의 경우「방위사업법」,「군수품관리법」,「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소방분야의 경우에도「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한 바가 있어, 해양경찰의 경우에도 해양주권수호 역량강화, 해상 대테러 능력 증강 등 기능과 수요 확대에 따른첨단화된 경비함정, 특수함정, 다양한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 등 해양경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증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 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의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해양경찰장비 제조자·판매자 또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해양경찰청장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해양경찰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고 해양경찰 장비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장비 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아. 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건조·수리하거나 항공기를 제작· 구매·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한 관리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건조·수리 또는 제작업체에 감독관을 지정·배치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5조).

- 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 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 2. "탑재장비"란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제작하여 해양경찰 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 4. "관리"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 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정비·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 5.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6. "처분"이란 매각, 양여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 7.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해양경찰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 8. "해양경찰장비관리자"란 해양경찰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장은 해양경찰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2.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 3. 해양경찰장비의 도입을 위한 재원 확보
- 4. 해양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 5. 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 6.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해양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2. 해양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 3. 해양경찰장비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 4. 해양경찰장비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 5. 해양경찰장비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 6. 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 7.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제조자·판매자 또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 제7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운용성을 증 진할 것
 -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제8조(계약의 특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같은 성능과 형식의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요탑재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 제10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①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해양경찰장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 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도 평가는 동일한 설계구조를 가진 함정에 대해서는 그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본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3조(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안전도 평가결과 또는 사고나 고장으로 해당 해양경찰장 비의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간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다.
- 제15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 및 「국 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 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해양경찰장비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인증

- 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인증) ① 해양경찰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해양 경찰장비를 도입하고 해양경찰장비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 ② 인증을 받으려는 해양경찰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양경찰장비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해양경찰장비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유효기간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해양경찰장비 인증의 취소)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해양경찰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경찰장비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해양경찰장비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해양경찰장비 인증기관(이하"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해 양경찰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인증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에 대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⑥ 해양경찰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증절차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인증한 경우
-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⑧ 인증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인증서의 발급) 인증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1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경찰장비 (이하 "인증해양경찰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해양경찰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장비의 특성상 인증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7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경찰장비 또는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

- 제23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직 무를 수행하는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장비의 외관을 도장(塗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③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 공기를 제외한 선박 및 항공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도장 및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에서의 안전 및 수색구조 등 해양경 찰 업무를 지원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제24조(경광등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감독관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건조·수리하 거나 항공기를 제작·구매·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한 관리 및 성 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건조·수리 또는 제작업체에 감독관을 지정·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③ 감독관의 배치기준・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① 해양경찰장은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 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양경찰장비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 해양경찰장비의 전시 및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 등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해양경찰장비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수수료)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9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 2. 제2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 관에서 해양경찰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자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인증을 하거 나 인증서를 발급한 자
-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 장 및 표시를 한 자
 -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경광등을 설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 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